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



경 기 도
[기 획 조 정 실]

목 차

I. 조례 보유 현황	2
II. 조례 입법 및 정비 실적	3
III.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	4
1.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4
2. 도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	7
3. 시·군 자치법규 심사 강화	8
4. 공무원의 법제역량 강화	9
IV. 조례 정비대상(안)	10
V. 간부공무원 명단	20

I

조례 보유 현황

(2015. 2. 28. 현재)

상임위명	조례	소관 실·국
계	496	
의회운영 위원회	28	대변인 4, 대외협력담당관 1, 의회사무처 23
기획재정 위원회	51	기획조정실 39, 감사관 7, 균형발전기획실 5
경제과학기술 위원회	68	경제실 68
안전행정 위원회	79	자치행정국 50, 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비상기획) 2, 재난안전본부 27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35	문화체육관광국 35
농정해양 위원회	38	농정해양국 25, 축산산림국 4, 농업기술원 5, 축산위생연구소 1, 산림환경연구소 2, 해양수산연구소 1
보건복지 위원회	64	보건복지국 64
건설교통 위원회	34	건설국 14, 교통국 13, 철도국 5, 건설본부 2
도시환경 위원회	64	도시주택실 27, 환경국 25,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3, 수자원본부 9
여성가족교육 협력위원회	35	여성가족국 22, 교육협력국 11, 여성비전센터 1, 여성능력개발센터 1

II 조례 입법 및 정비 실적

□ 입법 현황(공포 기준)

[2015. 2. 28. 현재, 단위 : 건]

연 도	조 례			
	소 계	제 정	개 정	폐 지
2015. 2	35(31)	20(18)	15(13)	-
2014	134(96)	52(45)	77(48)	5(3)
2013	107(74)	34(30)	71(44)	2(0)
2012	182(123)	70(61)	99(61)	13(1)

* ()는 의원발의 조례임. ‘15. 3. 3 공포 조례 16건 미포함

□ 연도별 조례 일괄정비 실적

- 2014년 조례 일괄정비 : 2회, 14건
 -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 6건
 - 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 8건
- 2013년 조례 일괄정비 : 2회, 173건
 -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 140건
 -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 33건
- 2012년도 조례 일괄정비 : 3회, 283건
 -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 10건
 - 경기도 조례 용어등 일괄정비 : 262건
 -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 11건

Ⅲ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

1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새로운 행정수요 및 각종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처하고자 함

□ 정비 개요

- 정비기간 : 2015. 3. ~ 정비완료 시 까지
- 정비대상 : 조례·규칙 등
- 추진방안
 - 자치법규 정비체계 구축·운영
 - 자치법규 일제조사 및 발굴 조례 정비 추진
 - 행정자치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과 연계 추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관리 철저 및 서비스 개선
 - 교육을 통한 도 및 시·군 공무원 법제 전문성 강화

□ 자치법규 정비체계 구축·운영

- 효율적인 일제정비를 위해 각 실·국별 소관 자치법규 정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과 책임 부여
 - 각 실·국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수립, 정비대상 파악, 추진상황 관리, 조례의 종류 조사 등
- 시·군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전파
 - 시·군 자치법규 담당자 회의 개최 및 정비계획 시달 : 3월 중
 - 시·군 자치법규 정비 실적 보고(분기별/행정자치부)

□ 자치법규 일제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5. 2. 12 ~ 2. 25
- 조사대상 : 총 729건(조례 473, 규칙 176, 훈령 76, 예규 4)
 - * 의회사무처 소관 23개 조례는 미포함
- 조사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이탈, 불일치 등 포함)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 현실과 불부합 및 존치이유 상실
 - 다른 자치법규와 유사 또는 중복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조사결과 : 정비대상 조례 118건(규칙 등은 결과 검토 중)

□ 정비대상 조례 발굴 현황

- 정비대상 : 118건
- 정비방법 : 개정 113건, 폐지 5건
- 주요 정비사유

합 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 반영	행정변화 현실불부합	유사·중복 폐지대상	직제·부서 명칭변경	용어 등 정 비
118	59	18	1	15	25

□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인 사항 : 조례 5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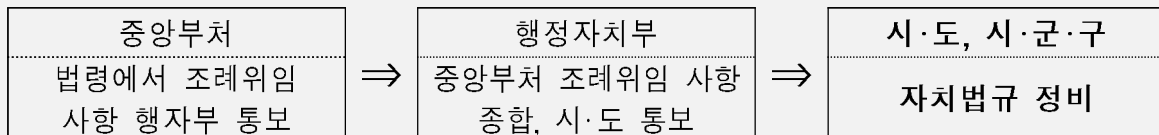
-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안(54건) : 3월 임시회 안건 제출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항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및 용어 등 정비
- ※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22건) : '15. 3. 6 공포

□ 세부 추진계획

- 준비기간 : 2015. 3 ~ 준비완료 시 까지
- 준비대상 : 조례 64건(개정 59, 폐지 5)
- 준비방법
 - 준비대상 조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완료하고, 준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준비사유 발생 시 즉시 준비 추진
 - 상위법령의 명칭 및 인용 조항의 변경, 용어 등 단순 준비사항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정비 방식으로 추진
 - 조문내용의 변경 또는 폐지 조례안은 소관 부서에서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 정비절차 이행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 개요('15.3.3. 방침 전달) >

- 정부 3.0 차원의 종합적인 자치입법 정비체계 구축·운영(1월~)
 - 행자부, 법제처, 기재부 등 2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 공무원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정비
 - ※ 행자부에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정비 지원
-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제도 운영 강화
- 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전방지를 위한 컨설팅 강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제·개정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 시·도 통보(분기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서비스 지원 강화(6월)

2

도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

□ 심사 개요

- 관련근거 : 「법제업무 운영 규정」,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 심사방법 : 초안심사·본심사·독회 등 3단계 법제심사 실시
- 심사내용 : 조례·규칙 등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 검토

□ 심사 실적

- 제·개정 현황(공포 기준)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조 려				규 칙			
		소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소 계	제 정	개 정	폐 지
2015. 2	41	35(31)	20(18)	15(13)	-	6	-	6	-
2014	173	134(96)	52(45)	77(48)	5(3)	39	6	29	4

※ ()는 의원발의 건수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단위 : 회, 건]

연 도	심의회 개최	심의건수					
		계(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일반안건
2015. 2	9	47	30	10	5	-	2
2014	34	249	180	41	15	2	11

□ 2015년 추진계획

-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제심사
 - 도민일반,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 입법 전(全) 단계에서의 적극적 입법지원
 - 집행부 입안단계부터 조례안의 법리적 쟁점 등을 조기 검토·지원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단계에서 사전심사를 적극 실시하고 법제처 의견제시제도 활용
 - 심사단계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대립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쟁점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대안 제시
- 법제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외부 전문인력 충원

3 시·군 자치법규 심사 강화

□ 심사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28조
 - 조례는 의회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 규칙은 공포예정 15일전 보고
- 심사대상 : 시·군 조례안 및 규칙안
- 심사내용 :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권고

□ 시·군 자치법규 현황 및 심사 실적

- 시·군 자치법규 현황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조 례	규 칙
2014	12,773	9,227	3,546

- 시·군 자치법규 심사 실적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조 례	규 칙
2014	합계	3,199	2,248	951
	본 청	2,086	1,546	540
	북부청	1,113	702	411

- 재의요구 및 시정권고 현황
 - 도지사 ⇒ 시장·군수 재의요구 : 2건
 - 도지사 ⇒ 시장·군수 시정권고 : 17건

□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안 사전심사제도 운영 강화

- 조례안의 적법성 심사기준 및 체계 구축
 - 조례 제·개정 사항을 주무부서에 사전 통보 시 상위법령 합치여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여부 등 주요 심사 포인트 제공
- 주요 사안의 경우 심사결과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적법한 경우에도 부서의견을 시·군에 통보 조치

□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교육 실시

- 교육기간 : 연중 계속
- 교육대상 : 도 및 시·군 공무원, 외국인주민 업무담당자 등
- 강 사 : 법무담당관 소속 법률분야 전문인력풀 활용
 - * 법률자문관 3, 변호사 3, 법학박사 5
- 시행방법
 - 과목·강사·시간·장소를 교육 신청기관에서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
 - 이론중심 강의를 지양하고 현장에서 통하는 사례중심의 참여식 교육

□ 법률자문단 구성과 시·군과의 네트워크 구축

- 강사중심의 법률자문단 구성과 시·군의 법률자문 공식화(관련 훈령개정)
- 최신 법률지식에 대한 적시제공(인터넷 정보망 구축)

< 2014년도 법률교육 실적 >

- ◎ 도 및 시·군 공무원 법무교육 : 17회, 1,420명
 -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쟁점사례 해설
 - 소송 실무,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실무, 민법기초, 청문 등
- ◎ 법제처 주관 법제교육 : 140명(상반기 80명, 하반기 60명)

IV

조례 정비 대상(안)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소 계	64 건			소 계
1	경기도 도정 소식지 발행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정비 (제6조)	- 대변인	- 소통기획관	홍 보 담당관
2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정비 (제4조, 제8조)	- 대변인 - 홍보협력팀장 - 홍보협력담당 실무자	- 소통기획관 - 홍보담당관 주무팀장 - 홍보담당관 주무팀 실무자	홍 보 담당관
3	경기도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행정의 효율성 저해 및 도지사 권한을 사전에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 (안 제6조 및 제7조)	제6조제1항(도의회 보고) 제6조제2항 :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제7조 중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삭 제> 제6조제2항 : 업무제휴나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기 획 담당관
4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용어등 정비(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규정에 -도 및 도내 시·군이 -위탁하고자 할 -각 호의 1 -시장·군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 이하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제1항에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려는 -각 호의 어느 하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미래전략 담당관
5	경기도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근거법률 조항이 삭제되어 존치 불필요(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평 가 담당관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6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상위법령의 개정 에 따른 용어 정비(제3조제3호)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법 무 담당관
7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각하 및 조정·화해권고 결정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제2조1항, 제5조3항)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신설)	-원고 청구의 각하 또는~ -조정·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무 담당관
8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요건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미반영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조 사 담당관
9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 조례 명칭 변경 (제11조)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통일·민 조 성 담당관
10	경기도경제단 체인합회지원 조례	지방재정법의 개정 에 따라 지원규정 정비(제2조제1호) ⇒의원발의 개정안 발의중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삭 제>	경 제 정 책 과
11	경기도 과학 기술진흥 조례	용어 정비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3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3항)	하고자 하는 ~에 의한 ~에 의한 사고가 있을 때 ~에 의한 당해 ~에 의한	하려는 ~에 따른 ~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 따른 해당 ~에 따른	과 학 기 술 과
12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 (제2조,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에 의한	~에 따른	과 학 기 술 과
13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자유무역협정 체결범위 확대 추세에 따른 피해산업 규정범위 확대 (제2조 2항) ‘14.10.1자 조직개편 반영 (제8조 2항)	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행정(2)부지사	농업, 수산업, 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 소관 업무담당 부지사	국 제 통 상 과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14	경기도부속의 원설치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정비(제7조제2항)	~에 의한다	~에 따른다	총무과
15	경기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용어정비 (제4조제4항, 제6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불일치하는 내용 정비 (제12조제2항)	~에 의한 비치하고 응하여야 한다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에 따른 갖추어 두고 따라야 한다 지체 없이	총무과
1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정비(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에 의한	~에 따른	자 치 행정과
17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정비(제6조, 제7조, 8조)	~에 의한 이 조례에 의한 ~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 따른 이 조례에 따른 ~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치 행정과
18	경기도행정서 비스현장운영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정비(제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에 의한 ~에 의하여 1회	~에 따른 ~에 따라 한 차례	언제나 민원실
19	경기도 민원모니터운 영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정비(제4조, 제10조)	~에 의하여 ~에 의한	~에 따라 ~에 따른	언제나 민원실
20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신설> <신설>	-소방기본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신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 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 난 안전과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2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 조례 전부개정	재 난 대응과
22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등 명칭 변경	-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안전총괄업무 담당과장 -안전총괄 업무 담당국장	-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안전문화업무 총괄팀장 -안전교육훈련 업무 총괄 담당관	안전교 육훈련 담당관
23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과 동 조례의 빗물관리 기본계획은 유사계획 으로 수립이 불필요 하므로 조례 폐지		<폐 지>	재 난 대책과
24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문화이용권·여행이용 권·스포츠관람권 사업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 라 제명 및 조문 정비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권 구입 및 참여 기회” “문화바우처”	「경기도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조례」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기회” “통합문화이용권”	문 화 정책과
25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경기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자료의 보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정비할 계획		개정안 세부내용 검토 중	문 화 유산과
26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제9조(위촉해제) 조항만 있음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추가(제9조의 2 신설)	체 육과
27	경기도 고령농업인지 원 조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 자율성 부여 (제5조제2항) -용어등 정비 (제6조제4항,	-고령농업인이 추진 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인건비 와 재료비로 구성하며, 연간 1명당 120시간 이내 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 에서 재료비 편성 가능 -도의회	<삭 제> -도의회	농 업 정책과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제10조제2항)	농림수산위원회 -농업정책 담당 사무관	-고령농업인 업무 담당 사무관	
28	경기도 귀농인지원 조례	상위법령의 제정 ('15.1.20) 사항 반영		개정안 검토 중	농 업 정책과
29	경기평택항만 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공사의 사업내용 추가 및 용어 정비(제19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제7장 별칙신설)	<신 설>	4.항만물류활성화를 위한 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제7장 별칙 제40조(과태료)	해양항만 정책과
30	경기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4조, 제6조)	-제4조(동물등록 제외 지역) -제6조(동물보호센터 의 설치·운영 및 지정) <신 설>	<삭 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제6조제2항제1호~ 제3호 삭제) -동물보호센터 지정 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에 정함	동물방역 위생과
3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	-정의 규정 용어 정비 (제2조) -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제6조)	- “생활원예활동 “이란 - “도시농업공원” 이란 <신 설> <신 설> <신 설> 도시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삭 제> “도시농업 공동체” 란 “도시텃밭” 이란, ” 상자텃밭” 이란 도시농업위원회를 둔다	농 촌 자원과
32	경기도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시험· 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연구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미 확장(제2조, 제9조)	내수면양식대상어종	양식대상종	경기도 해양수 산자원 연구소
33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불일치 하는 내용이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제5조)	제5조(사업) 제1호 ~ 제7호	제5조(사업) 제1호 ~ 제11호	농 식품 유통과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34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 (제6조제1항제2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농식품 유통과
35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 (제3조제2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농식품 유통과
36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제2조, 제7조)	~자; ~하여금 ~응하여야 한다.	~사람 ~에게 ~따라야 한다.	무한돌봄 복지과
37	경기도 사회복지위원 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제8조제2항), ‘15.7.1. 시행 예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3~4월 입법예고 예정) 이후 개정 추진	~응한다.	~따른다.	무한돌봄 복지과
38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른 용어정비 (제5조제2항)	~ 자	~ 사람	무한돌봄 복지과
39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제8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무한돌봄 복지과
40	경기도무한돌봄 센터 설치· 운영 지원조례	조직개편으로 무한돌봄 센터가 무한돌봄 복지과로 이체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 정비 추진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검토 중	무한돌봄 복지과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41	경기도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제8조)	익년도	다음 해	무한돌봄 복지과
4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항 수정 (제2조3,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과
43	경기도 광역정신 보건심의위원 회 조례	용어정비(제4조제2항) 용어정비(제6조제2호)	전임자의 잔여기간 부적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부적합	건 강 증진과
44	경기도 심·뇌 혈관질환 예방 관리 조례	용어정비(제2조제1호나목) 용어정비(제12조제1항) 용어정비(제12조제2항) 용어정비(제13조제1항) 용어정비(제14조제3항)	~에 의한 심·뇌혈관질환자 등록관리 할 수 있다. 제12조에 의한 심·뇌 혈관질환 다중이용시설	~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선행질 환자 등록관리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2조에 따 른 심·뇌혈관질환 공중이용시설	건 강 증진과
45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용어정비(제6조제6항) 용어정비(제7조제2항) 용어정비(제8조제2항)	전임위원의 잔여기간 ~에 의한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에 따른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건 강 증진과
46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용어정비(제3조제2항, 제 6조, 제6조제1항, 제6조제 5항제3호) 용어정비(제7조제1항) 용어정비(제7조제4항) 용어정비(제8조제1항) 용어정비(제8조제3항) 용어정비(제9조제1항) 용어정비(제9조제2항) 용어정비(제9조제3항) 용어정비(제9조제3항제 1호) 용어정비(제9조제4항)	정신보건센터 센터내에 경기도정신 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센터내에 경기도정신 보건센터 호선 의하여 의한 각호와 각호의 자중에서 시·도에서 단원중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 내에 경기도정 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 내에 경기도정 신건강증진센터 서로 투표하여 선출 따라 따른 각 호와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에서 단원 중에서	건 강 증진과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4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4조) *15.1.28.개정(15.7.29.시행) 용어정비(제7조 제6항) 용어정비(부칙 제2조제1항) 용어정비(부칙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임원)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에 의한 잔임기간	제4조제1항 임원 구성 규정을 전부개정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건 강 증진과
48	경기도 식품안전조례	제9조의 제목을 정비 하고,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폐지(제9조, 부칙 제2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간) 부칙 제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식 품 안전과
49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대상)	<신 설>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 가 있는 안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식 품 안전과
5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상위 법률 개정사항 반영 (제2조, 제4조, 제6조 등)	제2조(정의) 1. 점용료란 “도로법 제38조 2. “변상금”이란 법 제38조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1항 ④ 법 제42조제3호 ⑤ 법 제84조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1.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조(정의) 1. 점용료란 “도로법 제61조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 ④ 법 제68조제3호 ⑤ 법 제97조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건 설 안전과
51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상위 법률 개정사항 반영 (제2조 및 제8조)	자전거도로의 구분(3 종) ①자전거전용도로 ②자전거보행자겸용도 로 ③자전거 전용차로 <신 설>	자전거도로의 구분(4종) ①자전거 전용도로 ②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③자전거 전용차로 ④자전거 우선차로	도 로 정책과
52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점용료 등의 이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기준으로 개정하여 이자부과 업무의 혼선을 방지, 부처명 변경 (제4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 국토해양부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이자 국토교통부	하천과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53	경기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이유 상실 ※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14.5.2)			건설 본부
54	경기도공동주 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주택법 개정에 따른 품질검수 범위 변경 (제5조)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생략) 4.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현행과 같음)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 택 정책과
55	경기도 건축 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신규> <신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신규>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를 위하여 적용완화 대상 지정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대상 지정 -폐지 -전문위원회 구성,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건 축 디자인과
56	경기도 경관 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문 신설 및 개정)	<신설> <신설> <신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 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이 하 생 략]	제2조(정의)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시민의책무)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이 하 생 략]	건 축 디자인과
57	경기도옥외 광고물등관리 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문 신설)	<신설>	제10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건 축 디자인과

연 번	제 명	개정 또는 폐지 사유	주요 개정내용		소관 부서
			현 행	개정안	
5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제3조제2항: 노후불량 건축물(령 제2조제3항) -제9조의2: 주택재건축 사업의 규모 및 건설 비율(령 제13조의3제2 항 및 제3항) -제14조의2제2항: 주택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 주택 건설비율 및 용 도(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7조: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법 제48조제5항) -제21조의2: 공동이용 시설 사용료의 면제(법 제67조의2 신설) ※입법예고 중 ('15.2.17 ~ 3.9)	- 노후불량건축물 경 과 연수 : 20년이상 40년 이하 - 과밀억제권역 300 세대 이상 재건축 사업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60㎡이하 20%) - 용적률 완화에 따 른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건설비율 적용 대상 : 과밀억 제권역, 50/100 - 신설 - 신설	- 노후불량건축물 경 과 연수 : 20년이상 30년 이하 - 삭제, (신설) 가로 주택정비사업 기준 마련 - 용적률 완화에 따 른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건설비율 적용 대상에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 역 추가 - 감정평가 선정 기 준 마련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공동이용시 설 사용료 면제기 준 마련	도 시 재생과
59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로 제295회 임시회에서 개정 예정	미세먼지 PM10을 경보	미세먼지PM2.5, 오존을 경보대상 으로 추가 함	기 후 대기과
60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2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 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 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u>온배 수 재이용시설</u>	상하수과
61	경기도 지하수관리위 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제3조제3항)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62	경기도 교육정책 협의회 설치·운 영 조례	폐지 후 대체 조례제정 -상위법에 규정된 법정 부담금 만을 명시할 필요 경기도교육지원 조례와 통폐합 예정			교 육 정책과
63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 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에 의한다	~에 따른 ~에 따른다	교 육 정책과
64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폐지 후 대체 조례제정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와 통폐합 예정			교 육 협력과

V

간부공무원 현황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기 획 조 정 실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황 성 태	
정 책 기 획 관	지 방 부 이 사 관	이 재 철	
법 무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허 남 석	